

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석좌, 기금 및 초빙교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 11. 25.>

제2조 (정의 및 자격) ①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대학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명망있는 인물 중 종교단체 또는 기업체나 개인 등이 출연한 기부금 혹은 교비를 재원으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② 기금교수라 함은 대학이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임용된 전임교원으로 전임교원의 자격에 준한다.

③ 초빙교수라 함은 국내외 저명교수 혹은 인사로서 일정기간 대학의 교육적 필요에 의해 초빙된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0. 11. 25., 2011. 3. 1.>

④ 특임교수라 함은 해당분야의 많은 경험과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한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교육적 필요, 특별한 과업의 수행 등을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. <신설 2013. 2. 18.>

제3조 (자격) 삭제 <2011. 3. 1.>

제4조 (추천과 임용) ① 석좌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석좌교수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3. 1., 2013. 8. 7.>

② 기금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채할 수 있으며 임용기준과 임용기간 및 절차는 전임교원에 준한다. <개정 2011. 3. 1.>

③ 초빙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총장이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1., 2011. 3. 1., 2012. 2. 21.>

④ 기금교수의 임용기간은 전임교원에 준한다.

⑤ 삭제 <2011. 3. 1.>

⑥ 특임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, 임용기간은 총장이 정한다. <신설 2013. 2. 18.>

제5조 (처우) ① 석좌 및 초빙교수의 급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며 필요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. 기금교수의 급여는 해당기금에 준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0. 11. 25., 2011. 3. 1.>

② 석좌교수 혹은 기금교수, 초빙교수로 임용 시,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1. 25.>

제6조 (임무) ① 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,

1. 대학(원) 강의 및 연구
2. 특별 강의 및 세미나
3.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

② 석좌교수로 임용된 경우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2강좌 이하로 담당할 수 있다. 특별한 경우 특별강좌로 대체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1., 2010. 11.>

25.>

- ③ 기금교수의 임무는 전임교원에 준한다.
- ④ 초빙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신설 2010. 11. 25.>
 - 1. 대학(원) 강의
 - 2. 특별강의 및 세미나
 - 3.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
- ⑤ 특임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신설 2013. 2. 18.>
 - 1. 대학(원) 강의
 - 2. 특별강의 및 세미나
 - 3. 기타 교육 및 연구과 관련된 활동

제7조 (명칭부여) 기금출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정의 석좌 혹은 기금교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8조 (재원) ① 석좌교수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출연된 기금 혹은 교비로 충당한다. 기금교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서울신학대학교에 출연된 기금 및 교비로 운영한다. 초빙교수의 봉급은 교비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기금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. 명예석좌교수의 경우 외부지원 혹은 교비를 재원으로 한다. 특임교수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외부기금 혹은 교비로 충당한다. <개정 2010. 2. 1., 2011. 11. 25., 2011. 3. 1., 2013. 2. 18>

② 출연된 기금은 본 대학이 별도로 회계 관리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폐쇄)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규정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규정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